

-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대상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7조)
-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, 제28조(조례)
 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2조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4조
  - 「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

○ 그 밖의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3.11.17. ~ 2023.11.23.)

다. 비용추계서 첨부

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반영(2023.11.14. 가족지원과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제2항제2호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.
- 아울러 현 시대 흐름상 무연고 사망자 등이 증가 할 수 있어, 공설봉안시설·공설 화장시설의 운영 및 확충 등에 노력해야 할 것임.